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계획서
3.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 현황
4.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7조 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진흥시설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는 “변경지정신청서”로 본다.

제4조(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의 조성신청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 조성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 조성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③ 진흥단지 변경조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성신청서”는 “변경조성신청서”로 본다.

제5조(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의 개발 배경, 연혁, 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지정 대상 기술의 설계도 및 운용절차서
 4. 평가항목·평가횟수·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試料)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신기술의 독창성·진보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6. 국내외 사용 실적(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8. 그 밖에 신기술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②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 지정 후 개선 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기술 지정 후 국내외 활용 실적, 현장 적용 결과, 성능·효율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 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자료

제6조(신기술 지정의 신청 절차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4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 결과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신기술 지정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한다.

④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신기술 심사기간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심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
2.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
3.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및 의견 답변기간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

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립·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9. 기타 재난안전분야와 관련된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제8조(신기술 지정서 및 표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하였거나 개량한 사람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에 대한 보호 내용

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효기간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제품 등에 신기술 표지를 사용하거나 신기술 지정 사실을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신기술 지정서 및 표지 도안 등) ① 제8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기술 지정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④ 제8조에 따른 신기술 표지의 도안 및 사용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③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안전제품 인증서)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영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개시 7일 전까지 점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창업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창업 관련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창업기업확인서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요청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된 경우, 지원 여부, 지원계획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창업 지원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화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화 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

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요청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선정에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된 경우, 지원 여부, 지원계획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화 지원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에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수수료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과 제19조의7을 삭제한다

제19조의8과 제19조의9를 삭제한다.

별표 3과 별지 제20호의5, 제20호의6, 7, 8서식을 삭제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과 별지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서식을 삭제한다.